지게차가 경사로에서 전복되어 깔림

재 해 개 요

'14. 11월 충남 아산시 소재 퇴비 비료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비닐 롤을 운반하던 중 경사로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며 피재자가 지게차와 바닥 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지게차)

재해상황도(지게차가 넘어진 위치)

재해발생상황

- 재해는 지게차로 비닐롤(∅170×1,900mm, 20kg)을 약200m 떨어진 야적장으로 운반하던 중 급경사(10~15도)에서 발생함
- 동료작업자가 지게차 앞뒤에서 함께 이동 중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가속되는 것을 보고 속도를 늦추라고 했으나, 지게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며 피재자가 지게차에 깔림

※기인물(지게차)

- 모델 : H○○○20 - 제조사 : ○○중공업 - 적재능력 : 2,000kg

- 자중 : 3,440kg - 연료 : 경유 - 규격 : 3,570×1,160×2,160mm

○ 피재자는 방글라데시 극적의 외국인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, 재해 당일 지게차 운전연습 후 바로 지게차 작업을 실시함

○ 지게차의 안전띠는 제거된 상태여서 피재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함

재해발생 원인

- 해당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하나, 면허가 없이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운행함
- 지게차에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음
- 경사로로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(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포함)를 가진 자가 운전을 해야 함
-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하고,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해야 함

관련 법규

▶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)

-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(자격·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
 -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1과 같다. 【별표1】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면허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(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)

-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.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(전도 등의 방지)

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(이하 "유도자"라 한다)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